

'23.7.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제도개선 관련 Q&A

2023. 6.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안전망강화TF

<산재보험 적용>

1. '23.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제도가 변경되고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하는(전속성 요건) 특고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3. 7. 1.부터 해당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고용보험과 용어가 통일됩니다.

2.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 외에 적용확대되는 직종은?

☞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비전속 노무제공자 적용확대)과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1. 보험설계사: 기존에는 전속성이 있는 보험설계사만 적용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비전속 교차모집설계사도 적용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신협의 공제모집인도 '24. 1. 1.부터 보험설계사 직종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3. 방문강사: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4. 골프장 캐디: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5. 택배기사: 기존에는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전속 택배기사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한 택배사업자 소속의 설치를 수반하는 노무제공자(비전속 포함)도 적용됩니다.
6. 퀵서비스기사: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속성 기준(소득 및 종사시간 등)에 해당하는 퀵서비스기사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비전속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퀵서비스기사에게 적용됩니다.
7. 대출모집인: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모집인: 기존에는 전업 신용카드모집인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제휴모집인 등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9. 대리기사: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속성 기준(소득 및 종사시간 등)에 해당하는 대리기사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택송기사, 대리주차원 및 비전속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10. 방문판매원: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시적 기준에 해당하는 전속 (후원)방문판매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됩니다.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12.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13. 건설현장 화물차주: 주로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운전자들에 대해 신규 적용합니다.
14. 화물차주: 기존에는 특정 품목(시멘트, 철강재 등) 운송 및 산업(유통 산업 등)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용차기사를 포함하여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에게 적용됩니다.

15.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 노무제공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적용됩니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근로계약과 노무제공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16. 방과후학교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가 2024. 1. 1.부터 신규 적용됩니다.
17.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돕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 신규 적용합니다.
1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13세 미만) 교육시설장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신규 적용합니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연령, 소득(80만원 미만) 등에 따라 적용제외하는지?

☞ 아닙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 65세 이후 취득자, 외국인 등도 당연 적용됩니다.

4. 노무를 제공하는 도중에 질병,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을 때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폐지되며,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 보수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건설업·벌목업 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까지)에 한하여 휴업신고 가능합니다.

5. 노무제공자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신청을 하여 임의 가입한 경우 '23.7.1. 이후 산재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별개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실익 (타인 사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에게 산재보험 제도 변경과 해지 신청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6. '23. 7. 1. 이후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안내멘트가 끝난 후 0과 1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별 특고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 지역별 특고센터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담당전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원도	(전화) 02-6946-0500 (팩스) 0505-290-3102 0505-175-1203 0505-175-1204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1부 02-6946-05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2부 02-6946-05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3부 02-6946-0560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경기도(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전화) 032-712-0500 (팩스) 0505-134-1102 0505-175-1103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1부 032-712-05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2부 032-712-0520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화) 051-790-0300 (팩스) 0505-132-1102 0505-173-1103	051-790-0304/0315/0330 /0312/0329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42-718-0600 (팩스) 0505-139-1102 0505-250-1103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1부 042-718-069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2부 042-718-0697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7. 산재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 현행 입이직 신고와 직종별 기준보수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고 입이직 신고 제도는 폐지됩니다.

과거: 산재보험료 = 특고 직종별 기준보수 × 산재보험료율*

현행: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소속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

8. 개인별 월 보수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

월 보수액 = (A - B) - C [C = (A-B) × 경비 공제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

※ 단,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 직종이 부과지 사업(건설업·별목업 외의 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 산정 및 보상(골프장 캐디 직종은 '23. 12. 31.까지 한시 적용)하고 해당 직종들은 입이직 신고 제도가 유지됩니다.

9. '23. 7. 1. 이후에도 기준보수 적용 직종은 별도로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예. 기준보수 해당 직종(건설업·별목업 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입이직 신고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 및 부과됩니다.

10. 사업자등록을 하는 노무제공자(화물차주 등)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 직종별 요율은 아래와 같으며, '23. 7. 1.부터 적용됩니다.

직종	요율(단위: %)	직종	요율(단위: %)
① 보험설계사	5	⑩ 방문판매원	8
② 건설기계조종사	34*	⑪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7
③ 방문강사	7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7
④ 골프장 캐디	5	⑬ 화물차주	17
⑤ 택배기사	17	⑭ 건설현장 화물차주	34*
⑥ 퀵서비스기사	17	⑮ 소프트웨어기술자	5
⑦ 대출모집인	5	⑯ 방과후학교강사	6
⑧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⑰ 관광통역안내사	6
⑨ 대리운전기사	18	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벌목업에 종사 시 '23년도에 한하여 보험가입자(원수급인 등)의 사업장 요율을 적용합니다.

※ 직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0.1% 추가되므로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상기 요율에 0.1%를 더해야 합니다. 예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료율 0.6%

1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경비공제율은?

☞ 직종별 경비공제율은 아래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경비공제율과 동일하며, '23. 7. 1.부터 적용됩니다.

직종	경비 공제율(단위: %)	직종	경비 공제율(단위: %)
① 보험설계사	25.0	⑨ 방문판매원	22.0
② 방문강사	22.0	⑩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0
③ 골프장 캐디	15.6*	⑪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2
④ 택배기사	16.4	⑫ 화물차주	30.3
⑤ 퀵서비스기사	27.4	⑬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⑥ 대출모집인	27.5	⑭ 방과후학교강사	16.5
⑦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8.4	⑮ 관광통역안내사	25.6
⑧ 대리운전기사	28.1	⑯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 골프장 캐디의 직종별 공제율은 '24. 1. 1.부터 적용

13. '23. 7. 1. 이전에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입직 신고하여 '23. 7. 1. 현재 입직 상태인 종사자는 기존대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달라진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지?

☞ '23. 7. 1.부터 입·이직 신고 제도가 폐지되므로(건설기계조종사 등 기준 보수 직종 제외) 기입직자는 '23. 6. 30.자로 일괄 이직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매월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일은 '23. 7월분 월 보수액 신고 기한인 '23년 8월 말일까지입니다. '23. 6월분 보험료는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에 따라 7월에 부과('23.8.10. 납기)되나, 7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8월 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에 따라 9월 중 부과('23.10.10. 납기)됩니다. [8월('23.9.10.)에 부과 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 다만, 8월 15일 이전에 7월분 월 보수액 신고를 하는 경우 7월분 산재보험료가 8월 중 부과('23.9.10.납기)될 수 있습니다.

14.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직전에 신고된 월 보수액 또는 취득 당시 월 보수액으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지?

☞ 아닙니다. 산재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보수 또는 최근 신고된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보수액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권 조사를 통하여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5. 월 보수액 신고 금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 정정하는 방법은?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월 보수액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귀속월 월 보수액 신고서를 재차 제출하면 됩니다(신고서식과 정정서식 동일). 다만, 노무제공자가 정정 신고할 경우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산재보험료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상·하한액이 있는지? 가령 월 보수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해야하는지?

☞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과 달리 상·하한액이 없으므로 모두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7.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상실신고서를 해당 월 보수액 신고서로 간주하나, 산재보험의 경우 입·이직 관리가 폐지되었으므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8. '23. 7월 이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과 동일한가요?

☞ '월 보수액 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www.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수인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에서 가능하며,

- 해당 특고센터 전자팩스로 '월 보수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월 보수액 신고 서식이 동일하므로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19.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은 노무제공월 다음 달 15일,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기한은 노무제공월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동 신고서를 한 달에 두 번 제출해야 되나요?

☞ 아닙니다. 법령상 산재보험은 상용단기노무제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나,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 중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0. 기준보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로 월 보수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습니다. 기준보수 직종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월 보수액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2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방법은?

☞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므로, 노무제공자에게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면 됩니다.

- 다만, '24. 1월 귀속분 보험료('24. 4. 10.납기)부터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법이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료에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2,289,250원이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이 0.8%인 경우

구분	월 보수액 × 요율	산재보험료 (원단위 절사)	사업주·종사자 보험료 부담액
'23년 보험료	2,289,250원 × 0.8% = 18,314원	18,310원	18,310 ÷ 2 = 9,155원
'24년 1월분 보험료 부터	사업주	2,289,250원 × 0.4% = 9,157원	9,150원
	종사자	2,289,250원 × 0.4% = 9,157원	9,150원
	합계		18,300원

22. 노무제공자가 업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나요?

☞ '23. 7. 1.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직종별 요율이 적용되므로 노무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3. 노무제공자가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가 여러 명일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납부하는지?

☞ 각각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각 사업장에서 지급한 노무 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해당 월 보수액으로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별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설계사

24.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라면 교차모집인도 해당되는 것인지 ?

☞ '23. 7. 1.부터 교차모집인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3. 8월 말일까지 최초 월 보수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5. 보험설계사 퇴사 후 발생하는 수당은 월 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 퇴사 후 발생하는 수당 중 모집수당 등과 같이 퇴사 이전 귀속 월이 확인되는 소득은 해당 귀속 월 보수액 정정을 통해 월 보수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지수당처럼 퇴사 이후의 월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월 보수액에 미포함됩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6.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된다면, 비전속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23. 7. 1.부터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산재보험 관련 월 보수액 등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퀵서비스·대리운전업 사업주를 대신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이행하게 됩니다(고용보험과 동일).
-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직접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7. 대리운전기사는 현재 민간보험사에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이중부담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대리운전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임의가입)으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특약)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는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산재보험과 무관합니다.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므로 산재보험료와 이중부담이 아닙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영역(중복 보상 가능)이나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대리운전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제외하여 산재보험료와의 중복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28. 월 소득이 40만원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23.7월 이전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는데, '23.7월 이후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적용대상이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소득기준(월 보수액 기준 80만원 미만)은 유지되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에 상관 없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23.12.31.까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의 기준(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미만)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23.6월 소득이 521,700원(이하 “기준금액”)인 이상인 경우 '23.7.1.부터 산재보험 적용되므로 '23.8월 말까지 최초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합니다. '23.7.1.부터 적용된 노무제공자의 7월 월 보수액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직하지 않는 한, '23.12.31.까지 적용되므로 '23.8.31.까지 월 보수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 '23. 6월 입직한 A방문판매원의 6월 사업소득 60만원, 7월 사업소득 0원, 8월 사업소득 40만원인 경우

→ A방문판매원은 '23.7.1.부터 산재보험 적용 시작이나 7월 사업소득이 0원이므로 8월 말까지 월 보수액 신고하지 않음. 8월 사업소득이 40만원이므로 9월 말일까지 40만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신고. 7월 사업소득이 없어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3.7.1부터 적용되었으므로 해당일 이후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가능

※ 기존의 상시적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3호)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중인 방문판매원은 기존대로 보험관계 유지합니다. 상기 기준은 '23.6월에 입직하거나 적용제외 중인 방문판매원의 '23.6월 소득부터 적용하며 기적용 중인 방문판매원은 '23.6월 소득으로 재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물차주

29. 화물자동차는 영업용과 자가용이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화물차주로서, 영업용(아,사,바,자를 포함한 번호판) 화물자동차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30. 화물자동차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배우자 등) 명의를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 중 누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 운전사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명백해 보이나,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나 화주는 어떤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단순히 화물운송 중개·알선만 하는 경우 (선착불)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원화주가 보험가입자), ‘계약의 인수’ 방식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화물차주를 직접 사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주선사업자가 보험가입자입니다.

-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화주가 화물차주와 직접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화주가 보험가입자입니다.

32.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의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화물차주와 계약하여 노무 제공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 화물차주와 계약하여 노무제공을 받은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합니다. 보험가입자는 건설현장과 별도로 화물차주에 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월 보수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현장 화물차주

33. 건설현장 화물차주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 건설기계와 유사하게 주로 건설현장에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34. '23.7.1부터 적용되는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의 노무제공을 받는 건설 현장의 사업주는 해당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개산보험료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 2023년도 개산보험료는 다시 신고하지 않고, 2024.3.31.까지 2023년도 확정보험료에 해당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5.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건설 현장이 아닌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입·이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36.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에는 해당 사례의 사업계약 건을 비전속 노무제공으로 보아 근로자 산재보험만 적용하였으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23. 7. 1. 이후의 노무제공 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사업장과 사업계약 사업장에서 각각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이행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23. 7. 1.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다면 사업계약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후 기간의 노무제공에 대해 반드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어린이집강사

37. 현재 방과후학교강사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이 동일한가요?

☞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제외 대상이 없으므로 모든 방과후학교강사에 대해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등의 절차는 고용보험과 동일하며, 보험료율은 차이가 있습니다.(경비공제율은 동일) '24.1.1.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므로 '24년 2월 말일까지 최초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8. '24.1.1.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치원·어린이집 강사의 범위 및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가 해당됩니다. 위탁업체와 계약 후 노무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유치원·어린이집과 직접 계약하여 노무제공하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이 보험가입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9. 어린이통학버스기사로 경찰청에 A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운전은 B로 확인된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실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므로, B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40. 어린이통학버스로 13세 이상의 학원생을 운송하는 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시설의 어린이 등을 운송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3세 이상이 동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플랫폼운영자 특례 관련

41. 플랫폼 운영자 특례란 어떤 제도인가요?

☞ 사업주의 노무제공 요청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보수 미중개형 플랫폼 제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를 사업주 대신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주(보험가입자)는 아닙니다.

4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직종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특례에 해당되는지요?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직종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3. 플랫폼 운영자와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계약한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 플랫폼 운영자와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인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계약한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보수 미중개형 화물 전용 플랫폼 제외)를 합니다. 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의 차이가 있을뿐 보험관계 적용이나 보험료 부과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4. 개별 건이 아닌 장기계약이 체결되어서 플랫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공단에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5. 하나의 노무제공건(호출건)에 대해 발주사*와 수주사**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누구인지?

- * 음식점과 배달업무 수행계약(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
- ** 발주사 소속 배달기사가 콜을 수행할 수 없어 콜공유를 통해 타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가 콜을 수행하는 경우 타배달대행업체

☞ 발주사가 배달업무 수행계약 체결에 따른 호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콜에 대한 책임(배상)을 부담하므로 호출건별 노무 계약 상대자인 사업주(보험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발주사로부터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46. 마일리지, 프로모션, 인센티브 등 사례별 기사 수입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대상 월 보수액 판단 기준은?

☞ 사업주와 고객 간 약정한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간 약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과 동일한 원칙)
마일리지, 프로모션 등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업체별로 지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 과세여부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1> 마일리지: 사업주의 전화번호로 동일 고객이 대리운전 5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소득 지급한 경우
⇒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용 지불하는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주가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해당 마일리지 중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
- <사례2>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기사 확보, 영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에서 기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포인트 등
⇒ 사업주와 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 사업주와 기사 간 약정 금액(노무제공자 소득 배분 비율)과 별도로 일시적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비해당

47. 화물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화물운송이 취소된 경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 운수사업자 등 사업주가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48. 화물 플랫폼에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운송 건(플랫폼 미등록 화주가 전화로 운송 의뢰하여 운송물건, 운송료 등만 확인되고 사업주가 확인 안 되는 경우 등)은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플랫폼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운수사업자 등의 사업주가 직접 산재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49. 화물 플랫폼 운송 건 중 주선사업자가 순수히 주선(중개대리)만 하고 실제 운송에 대한 대가는 원화주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원화주이나, 원화주가 직접 화물 플랫폼을 이용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니므로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해당 운송 건에 대해 원화주가 직접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이행하고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50. 화물 플랫폼을 통한 운송 의뢰 건 중 유통배송기사·택배 기간선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인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고용보험 성립·월 보수액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 사업주와 화물운송 고정계약(1개월 이상) 없이 화물정보망 등 알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용차기사)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사무대행제도

51.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있는지?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8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산재보험 보험사무(보상 관련 업무 제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2.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을 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승낙하고 공단에 보험사무를 수임신고함으로써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집니다.

